

일본의 환경보전 행동계획

환경보전을 위한 국가 사업자·소비자의 자발적인 대응

I. 머릿말

1995년 12월 16일, 일본정부는 다양한 사회·경제활동주체가 각자의 입장에 따라 공평한 역할분담을 하여 환경보전행동에 자주적으로 참여하는 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환경보전 행동계획'을 각의에서 결정하였다. 본 계획은

① 환경부하가 적은 순환형 사회경제시스템의 실현 ② 자연과 인간의 공생 ③ 국가, 기업 등의 조직체와 국민의 참가 ④ 환경보전에 관한 공통적·기본적 시책 추진 ⑤ 국제적인 대응추진 등을 골격으로 하고 있다. 이번 환경보전행동계획은 기 수립된 환경기본계획(제3부 제3장 제3절)에 기초한 것이다. 분야별로 각 국가행정기관의 공통행동계획에 대해 관계성정 별로 업무상황에 따라 1996년말까지 업무 범위를 한정하여 계획내용을 수정하여 실행계획을 작성할 수 있으며, 2000년을 목표달성 기간으로 하여 기술상의 진전상황과 실적에 따라 1997년말까지 재검토가 될 것이다. 또, 지방공공단체, 정부관계기관 및 소관 공익법인에게도 계획 취지를 바탕으로 한 실천 대응이 실시될 수 있도록 주지시켜 필요한 지원에 노력하기로 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정부 및 관계성이 개별적으로 실행해 온 각종 환경보전대책을 환경보전 행동계획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실행함으로써 각 분야의 활동이 서로 연계성과 지속성을 갖도록 하는 것이며 분야별로 환경보전활동상의 적정분배가 되도록 배려한 것이다. 환

경보전 업무에 있어 정부부처간 역할분담과 이해관계로 늘상 문제가 있었던 우리의 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에서도 범국가차원의 환경보전행동계획을 수립하여 각 분야의 역할의 이해와 실천수법을 도모하는 것이 좋으리라는 기대로 일본의 환경보전행동계획을 소개한다.

II. 환경보전기본계획중의 근거내용

우선 1994년 6월 16일 각의에서 결정된 환경보전기본계획 중 환경보전행동계획의 수립근거가 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 제3부 시책의 전개
- 제3장 공평한 역할분담하에서 모든 주체의 참가실현
- 제3절 국가 사업자·소비자로서의 환경보전을 위한 대응의 실천실행

경제활동의 주체로서 국가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는 매우 커서 국가 스스로가 그 경제활동시에 환경보전에 관한 행동을 실행함으로써 환경부하를 저감

조운주·이진화·진윤숙

아태환경경영연구원 선임연구원

아태환경경영연구원 연구원

시키는 효과는 크다. 또한, 지방공공단체와 사업자, 국민의 자주적·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국가 스스로도 솔선하여 실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분야에 대한 대응을 제시한 정부전체의 행동계획을 책정한다.

- ① 물품·서비스의 구입·사용에서 환경보전에 대한 배려재생지 등의 재생품 이용, 저공해차 도입, 자동차의 효율적 이용 등
- ② 건축물의 건축, 관리등에서 환경보전에 대한 배려 건축물에 있어서 환경배려(태양광 이용 등 에너지의 유효이용과 물의 유효이용, 특정 프레온 등의 사용삭감·회수, 건물주변과 옥상의 녹화 등), 건설공사에 있어서 건설부산물의 재생과 이용, 목재행들사용 합리화 등
- ③ 기타 행정사무에서 환경보전에 대한 배려 에너지 사용량 억제, 쓰레기 분별, 폐기물 감량 등
- ④ 직원연수 등 직원에 대한 환경연수의 기회 제공, 정보제공, 휴가활용 등에 의한 직원 한사람 한사람의 환경보전활동의 장려 등

Ⅲ. 국가 사업자·소비자의 환경보전을 위한 행동계획

국가 사업자·소비자의 환경보전을 위한 대응의 실천행위를 위한 행동계획(1995년 6월 13일 각의결정)에 대하여 각의성령이 실시할 구체적인 세부목적 대응사례는 다음과 같다.

관계성령은 각각의 실정에 따라 가능한 한 적극적으로 이 대응을 실시함과 아울러 기타 적절한 대응으로서 이 계획달성에 최대한 노력한다.

본 보고는 필요에 따라 수정한다.

1. 물품·서비스의 구입·사용에 따른 환경보전배려

1) 생산단계에서의 환경부하가 적은 제품, 원재료의 선택

(a) 재생지의 사용

① 구입, 사용하는 복사용지, 사무용지, 전표 등의 용지류는 에코마크, 그린마크 등 각종 환경라벨링 사업의 대상제품을 입수할 수 있으므로 환경마크 사업대상제품과 이와 동등한 재생지로 한다.

② 상기의 용지류에 사용하는 목재펄프의 사용상황등을 각 성령의 부,국등 적절한 단위에서 파악·관리·삭감한다.

③ 외주 등에 의한 인쇄물, 위탁 보고서에 사용되는 종이를 환경라벨링 사업대상제품과 동등의 재생지로 한다. 또한, 이러한 인쇄물은 현종이 사용물을 명기하며, 가능한 경우는 시중의 회수 현종을 포함한 재생지 사용확대를 꾀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④ 국가가 폐내는 일부 교과서에 재생지 사용을 추진한다.

⑤ 가능하면 백색도가 보다 낮은 용지를 선택한다.

(b) 재생품 사용

① 구입·사용하는 문구, 기기, 작업복 등의 물품에 대하여 재생재료로 만들어진 것을 사용한다.

② 구입·사용하는 종이류, 타올류 등에 대하여 무표백제품을 사용한다.

③ 간벌재, 소경목 등의 목재와 미이용 섬유 등을 이용량이 적은 원재료로 만들어진 제품을 사용한다.

④ 처음 사용하는 원재료로 만들어진 제품을 사용할 경우는 재사용 또는 리사이클이 가능한 것을 사용한다.

2) 사용단계에서의 환경부하가 적은 제품, 원재료의 선택

(a) 환경부하가 작은 연료사용 구입, 사용하는 연료에 대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연료설비로 이용가능한 경우에는 등유, LPG, LNG 등 환경부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한다.

(b) 에너지절약형 OA 기기 구입 현재 사용하고 있는 퍼스널컴퓨터, 워드프로세서, 복사기 등에 대하여 구형의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제품은 폐기 또는 교환작업을 계획적·중점적으로 추진한다. 교환은 에너지 소비량이 보다 적은 것으로 선택하며, 신규 도입 또한 마찬가지이다. 즉, 폐기하는 OA기기가 폐기물로서 처리되는 경우에는 적정히 처리되도록 노력하고 특히, 폐기되는 냉장고 속의 CFC에 대하여 적정회수를 도모한다.

(c) 절수기기 도입현재 사용하고 있는 세탁기, 실내청정기 등에 대하여 물사용량이 많은 소비형 제품의 폐기 또는 교환을 계획적·중점적으로 추진하고, 교환에 있어서는 절수형의 것의 선택하며 신규구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

다. 즉, 폐기하는 세탁기,실내청정기 등이 폐기물로서 처리되는 경우에는 적정히 처리되도록 노력한다. 특히, 폐기되는 실내청정기 속의 CFC에 대해서는 적절히 회수하여 재이용되도록 한다.

(d) 저공해차 도입

① 보유하는 공용차를 저공해차로 교체하여 그 조건정비를 갖추면서 계획적으로 추진하며 당해 차량의 우선적 이용을 도모한다. 또한, 저공해차용 연료를 공급하는 시설이 관계 주변에 정비되도록 1996년말까지 검토한다.

② 차량 교환은 사용상태를 바탕으로 최소 한도(크기)의 차를 선택하는 등 보다 환경부하가 작은 차의 도입을 추진하여 당해 차의 우선적 이용을 도모한다.

(e) 기타 사용단계에서의 환경부하가 적은 제품, 원재료의 사용

① 도료 등은 유기용제의 함유율이 낮은 것을 사용한다.

② 선박용 윤활유와 주로 야외에서 사용되는 유압작동유(외부로 누출될 가능성이 있는 것에 한함)와 같이 환경부하를 미칠 가능성이 있는 기름은 생분해되는 것을 사용한다.

3) 기타 환경부하가 작은 제품, 원재료의 선택

(a) 환경부하가 작은 제품, 원재료 사용

① 물품의 조달에 있어서 환경부하가 작은 제품이나 재료 등의 사용이 촉진되도록 제품사양을 사전확인한다.

② 환경부하가 작은 제품을 공동구입함으로써 시장육성, 가격저하효과가 기대되므로 환경기본계획을 추진하는 관계 성령회의에서 공동구입하는 방향을 검토하여 가능한 방법은 실행한다.

(b) 제품조달에 관한 추진·장려 목록
 책정 구입·사용하는 종이류, 문구, 기
 기, 가전제품, OA기기, 공용차 등에
 환경기본계획을 추진하는 관계성청회의
 에서 1996년말까지 환경부하가 작은 물
 품사양을 추진하고 장려 목록을 작성하
 는 것을 검토한다. 이 목록이 책정된 경
 우에는 물품등의 조달에 적극 참조하
 여 기술추진을 바탕으로 해마다 목록을
 재검토한다.

4) 환경부하 삭감을 위한 자원이용 절
 약

(a) 용지류의 사용량 삭감

- ① 복사용지, 사무용지, 전표 등 용지류
 의 연간 사용량에 대하여 각 성청의
 부국 단위등 적절한 단위로 파악하고
 관리, 삭감한다.
- ② 회의용 자료와 사무절차를 한층 간
 소화 한다.
- ③ 각종 보고서류의 크기를 규격통일화
 하고, 그 페이지수와 부수에 대해서도
 최소 필요한 분량이 되도록 재검토한다.
- ④ 양면인쇄, 양면복사를 철저히 실행한
 다.
- ⑤ 이면지 사용을 촉진한다.
- ⑥ 사용한 봉투를 재사용한다
- ⑦ A4 문서의 슬림화를 도모한다
- ⑧「행정정보화촉진 공통실시계획」에
 따르는 외에 환경보전의 관점에서
 Paperless System의 조기확립을 도모하
 기 위하여 전자미디어 등의 이용에 의
 한 정보시스템 정비를 촉진한다.

(b) 공용차 대수의 검토

공용차 대수등 사용실태를 정밀검사하
 며 그 삭감을 도모한다. 사용증지된 차
 가 폐기물로서 처리될 경우에는 적정
 히 처리되도록 노력한다.

(c) 제품의 장기사용

- ① 용기를 이용하거나 포장할 경우 용
 기 또는 포장의 재이용과 리사이클을
 도모한다.
- ② 대체(Refill)가능한 세제, 문구 등을
 사용한다.
- ③ 음료등의 구입시에 리필용기로 판매
 하는 음료를 구입한다.
- ④ 일회용 용기에 대하여 적절한 회수
 경로를 설치한다.
- ⑤ 청사내의 매점에서 일회용 용기로
 판매하는 것을 자제 또는 금지하도록
 호소한다.
- ⑥ 책상등 사무용품의 부적합, 수명이
 다하지 않은 전기제품 등의 고장시에는
 그 수선에 노력하여 재이용을 도모한다.

5) 환경부하가 작은 형태의 판매방법을
 사용하는 상품선택

(a)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자동판매기
 설치의 재검토 청사내의 자동판매기 설
 치 실태를 자세히 조사하여 에너지 소
 비가 보다 적은 기종으로 전환하고 설
 치 숫자를 삭감한다.

(b) 구입시의 과잉포장의 재검토 간략하
 게 포장된 상품을 선택·구입한다. 또한,
 리사이클이 가능한 포장재를 사용한 제
 품을 적극 선택·구입한다.

2. 건축물의 시공, 관리시
 환경보전에 대한 배려

1) 환경부하 삭감에 배려한 건축물의
 정비

(a) 적절한 오염물질 처리시설 등의 설
 치

- ① 현재 적용가능한 최선의 기술을 사
 용한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매연발생시
 설로 인하여 생기는 오염물질을 삭감한

- 다.
- ② 연소설비의 개선에 있어서는 등유,
 LPG, LNG 등의 환경부하가 상대적으
 로 작은 연료사용이 가능하도록 적절한
 대응을 도모한다.
- ③ 중유를 연료로 하는 설비를 갱신할
 때는 가능한 한 중유에 비해 환경부하
 가 상대적으로 작은 연료로 변경한다.
- ④ 각 성청부속의 시험연구기관은 유해
 물질 사용에 있어서 배기처리와 배수
 처리 등을 확실히 하는 등 환경부하저
 감에 충분히 배려한다.
- ⑤ 기존 건축물에 사용되는 석면의 적
 정처리를 지속적으로 진행시킨다.

(b) 에너지절약·자원절약 추진

- ① 태양광이용 등 자연에너지의 활용설
 비에 대하여 규모, 용도에 따라 검토·
 도입한다.
- ② 폐열의 미이용 에너지의 이용을 검
 토한다.
- ③ 건축물이 입지한 지역에서 지역냉
 난방사업이 계획될 경우는 이에 참가
 하도록 권유한다.
- ④ 단열성능 향상을 위한 외부공기의
 활용·차단이 가능한 건축자재의 사용
 과 차양, 유리창 등의 개구부 구조를
 검토하여 정비한다.
- ⑤ 엘리베이터 운전의 고도제어, 에너지
 절약형 조명기기설치, 공조기기의 운전
 제어가 필요한 건축설비에 대하여 규
 모·용도에 따라 검토, 정비한다.
- ⑥ 건축물의 규모·용도등을 검토하여
 열병합시스템 등 에너지사용의 합리화
 를 위한 설비를 도입한다.
- ⑦ 건설재료는 재생된 것 또는 재생가
 능한 것에 한하여 사용하며, 콘크리트
 덩이등의 건설폐재와 슬래그, 폐유리
 노반재, 타일 등의 원재료의 일부로 재
 이용한다.
- ⑧ 심야전력이 가능할 경우는 심야전력
 이용기기를 도입한다.

(c) 물이용의 합리화

- ① 적절한 이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빗물저장탱크 등의 빗물이용시설 도입에 대하여 건축물의 규모·용도에 따라 검토하여 설치한다.
- ② 투수성포장, 침투구 등을 필요에 따라 설치하여 빗물의 지하침투를 도모한다.
- ③ 건축물에서 배출되는 배수를 재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규모·용도에 따라 배수이용 시설의 도입에 대하여 검토하고 설치한다.
- ④ 필요에 따라 감식식 수도꼭지, 자동수전 등 절수에 유효한 기구를 설치한다.

(d) 부지의 자연환경 보전

- ① 부지 안의 건축물 이외의 토지에서 자연이 보전되도록 적절한 식재를 한다.
- ② 부지내에서 녹지 등의 설치를 도모하는 것 외에도 가능하다면 건물옥상의 녹화를 도모한다.

(e) 환경부하가 작은 시공작업 실시

- ① 합판형틀을 한층 효과적·합리적으로 이용하고, 사용량의 삭감등 시공을 합리화하는 공법을 선택하는 발주자를 택한다.
- ② 출입차량의 배가스, 소음, 진동을 억제하는 발주자를 택한다.
- ③ 건설업과 관련된 지정부산물의 리사이클을 촉진한다.
- ④ 건설업자에 의한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를 발주자로서 확인한다.

(f) 기타

- ① 소화설비는 인명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장소를 제외하고는 할론소화설비를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할론소화설비의 갱신·폐지에 있어서는 데이터베이스에 의한 할론관리시스템을 활용하

여 할론을 적절히 회수·재사용하도록 한다.

- ② 공조설비 등의 신설, 갱신에 있어서 CFC를 사용하지 않는 제품을 선택하고 나아가 공조설비등의 기술개발 동향을 살펴면서 환경보전상 보다 적절한 냉매를 사용하는 것을 도입한다.

③ CFC의 사용을 폐지하는 경우는 CFC를 적절히 회수·재사용하도록 도모한다.

④ 건설업에 관한 지정부산물의 신규용도 개발에 노력한다.

2) 환경부하의 삭감을 배려한 건축물 등의 유지관리 및 그 주변의 자연환경 보전

(a) 환경부하 삭감을 배려한 건축물의 유지관리

- ① 오염물질 처리시설, 배수재이용·빗물이용설비 및 녹지 등의 일상관리를 철저히 한다.
- ② CFC를 사용하는 공조시설 등의 정비, 개수시에는 CFC를 적절히 회수·재이용한다.

(b) 녹화환경정비와 주변의 자연환경보전 추진

- ① 시설내, 창문, 옥상, 부지 등의 녹화의 계획적인 추진체제와 식재 등 적절한 유지관리를 도모한다.
- ② 녹지, 보도 및 측구 등의 관리를 적절히 하여 미관보전 및 소음방지를 도모한다.
- ③ 농약과 화학비료 사용량 절감에 노력하고 주변의 생태계 보전에 노력한다.
- ④ 가지치기한 나무가지와 낙엽은 소관지역내에서 퇴비화하여 폐기물로서의 배출을 삭감한다.
- ⑤ 쓰레기 불법투기를 막고 휴간지에 대해서는 녹화에 노력한다.

(c) 지역조성에 있어서 건전하고 풍요로운 환경확보에 공헌소관지역내에서의 각종 시설정비는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 양호한 대기의 확보, 양호한 수역의 생태계 확보, 경관보전, 역사적 환경의 배려에 노력, 지역의 자연환경과의 조화에 배려한다.

3. 기타 행정사무에 따른 환경보전의 배려

1) 환경부하 삭감을 위한 자원·에너지 이용의 절약

(a) 청사의 에너지 사용량 억제

- ① 에너지절약형 OA기기로 전환하고 그 적절한 사용을 도모한다.
- ② 사무실등 공조의 적정온도 (냉방의 경우는 28℃ 정도, 난방은 20℃ 정도) 유지를 한층 철저히 하도록 적정운전을 도모한다.
- ③ 에너지 공급시설의 적정한 운전관리를 도모한다.
- ④ 직원에게 계단 이용을 장려하고, 이용실태에 따라 엘리베이터 간격 운전을 추진한다.
- ⑤ 에너지절약형 형광등으로 교체하고 스위치를 적정관리한다.
- ⑥ 심야잔업을 위한 점등시간의 단축과 귀가시의 택시이용 감소, 직원의 복리후생 향상에 대응하여 수요일은 정시 퇴청한다. 이를 위하여 수요일 오후 5시 이후는 회의주최를 중지한다.
- ⑦ 직원복리후생향상요청에 대응하는 것과 함께 유급휴가의 계획적 소화를 더욱 철저히 하고 사무의 재평가로 야간잔업을 삭감한다.

(b) 청사의 절수 추진

- ① 가정과 같이 간편한 수법을 이용한 화장실 세정용수의 절수를 추진한다.
- ② 필요에 따라 화장실에 유수음(流水音) 발생기를 설치한다.
- ③ 수도꼭지에는 필요에 따라 절수마크를 붙인다. 더 나아가 수압을 낮게 설정한다.

(c) 공용차의 이용합리화

- ① 차 한 대별, 연료설비별 주행거리, 연비 등을 파악하여 연료사용량 조사를 구체화한다.
- ② 대도시의 엔진정지, 불필요한 공회전 중지 등 환경을 배려한 운전방법을 담당자에게 철저히 주지시킨다.
- ③ 타이어 공기압조정 등 정기적으로 차량을 정비한다.
- ④ 직원의 공공수송기관의 이용장려 등으로 공용차 이용의 효율화를 도모한다.
- ⑤ 택시권의 관리를 한층 철저히 하여 불요불급의 택시이용을 억제한다.
- ⑥ 1997년말까지 업무중에 사용하는 공용자전거 도입의 가능성에 대하여 검토한다.
- ⑦ 방문객에 대해서도 자동차 이용억제와 효율화를 주지시킨다.
- ⑧ 사무실의 적온화(냉방 28도, 난방 20도)를 유지하여 공간의 적정운전을 도모한다.
- ⑨ 에너지 공급설비의 적절한 운전관리를 도모한다.

2) 환경부하 삭감을 위한 폐기물의 감량화, 리사이클 추진

(a) 폐기물량 삭감, 분별수집에 의한 리사이클 추진

- ① 용기 또는 포장물 사용할 경우 용기 또는 포장의 재이용과 리사이클을 도모한다.
- ② 일회용 제품의 사용과 구입억제를 도모한다.

- ③ 종이 사용량을 억제한다.
- ④ 리사이클 확보를 내용으로 하는 각 청사별 리사이클 계획을 책정하고 실시 책임자를 지명한다.
- ⑤ 물품구입에 있어서 재사용 또는 리사이클하기 쉬운 제품을 선택하는 등, 리사이클 하기 쉬운 제품을 우선적으로 선택한다.
- ⑥ 사무실에서 분별회수를 철저히 실시한다.
- ⑦ 분별회수 상자를 사무실내에 충분히 배치한다.
- ⑧ 개인용 쓰레기통을 서서히 줄인다.
- ⑨ 슈레드 사용은 비밀문서의 폐기시만으로 제한한다.
- ⑩ 복사기, 프린터의 토너 카트리지의 회수와 리사이클을 촉진한다.
- ⑪ 음식찌꺼기, 식품잔재 등의 유기물질에 대하여 시설 부지내에서 퇴비화하여 토양으로 환원·이용한다.
- ⑫ 시설 소재지역에 폐기물 교환장소를 설치하여 폐기물 교환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 ⑬ 리사이클 지역회의 실시에 대하여 환경기본계획을 추진하는 관계성청회의에서 그 검토를 추진한다.
- ⑭ 중앙관청에서 배출되는 현종이등 제지류를 끊이는 시설 (펄프화 시설)을 관청 주변에 설치하는 사업을 검토한다.

3) 환경오염 방지를 배려한 각종 행정 사무실시

(a) 환경오염방지

- ①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매연발생시설에서 생기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을 파악하여 적절히 관리하고, 연료개선을 통하여 배출량 삭감에 한층 노력한다.
- ②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특정설치등에서 수질오탁물질 배출량을 파악하여 적절히 관리함으로써 배출량 삭감에 한층 노력한다.

- ③ 배출기준 및 배수기준의 준수를 철저히 하는 것외에 규제를 받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도 자발적으로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한다.
- ④ 이산화탄소에 대하여 배출삭감에 노력하고, 구체적으로는 상기 1, 2 및 3에 설명된 대응을 취한다.

4. 환경보전에 관한 직원연수의 실시

1) 직원의 환경보전의식 향상

(a) 환경에 관한 연수 및 정보제공의 적극적 실시

- ① 환경연수를 계획적으로 추진한다.
- ② 廳內誌, 팸플렛 등을 통해 재생지의 명확활용, 계획되고 있는 환경보전활동과 연수 등, 직원이 참가할 수 있는 환경보전활동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제공을 한다.
- ③ 환경에 관한 심포지움, 연수직원의 적극적인 참가를 위하여 편의를 제공한다.
- ④ 직원임용시험문제에 환경에 관한 내용을 출제한다.
- ⑤ 개발도상국의 환경연수생에게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b)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직원의 적극적인 참가 장려

- ① 환경보전활동을 희망하는 직원이 청소활동에 참가하기 쉽도록 환경을 조성한다. 국가가 주창하는 환경관계 제반행사에 있어서 환경에 관한 활동에 직원의 적극적인 참가에 편의를 도모한다.
- ② 환경보전활동을 희망하는 직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휴가신청을 용이하게 한다.

5. 술선실행계획 추진체제의 정비와 실시상황의 점검

1) 계획 실시상황의 점검을 바탕으로 한 효과적인 대응 확보

(a) 추진체제, 점검체제의 정비 등

- ① 업무실행계획을 책정한 성청은 그 이유가 되는 특수사정, 당해 업무실행계획의 대상이 되는 업무범위, 이로 인하여 진행되는 환경보전활동의 항목별 목표 및 대응내용을 명확히 한 후에 그 책정한 업무실행계획을 환경기본계획 추진 관계성청회의의 구성원에게 송부하여 당해 업무실행계획을 공표한다.
- ② 관계성청별 추진·점검체제를 1995년말까지 정비, 그 지정직 또는 그 책임과 권한이 명확화 된 상당 직급에 있는 자를 지명한다.
- ③ 본 술선실행계획의 실시상황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각 성청의 부국 단위 또는 필요에 따라 출처기관단위 등 적절한 단위로 파악하여 환경기본계획 추진 관계성청회의에서 매년 관계성청의 성과를 취합한 후 환경백서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해 공표한다.
- ④ 정부의 행정감찰에서 본 술선실행계획의 실시상황에 대하여 조사가 실시될 경우에는 관계성청은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 ⑤ 본 술선실행계획의 감사에 대하여 환경기본계획 추진관계성청회의에서 학식경험자 등의 교류로 감사의 객관성, 독립성을 확보하여 1996년말까지 실시한다.

IV. 맺은말

경제성장위주정책의 그늘에서 환경분야는 자연스럽게 소외되었으며, 오늘날 건잡을 수 없는 골치거리가 되고 말았다. 그간 성장의 중심이 되어온 경제활동주체가 환경을 배려한 행동 즉, 환경보전행동을 전개한다는 것은 성장과 환경보전의 조화를 지향한다는 정책상의 전환적 의미를 가진다.

우리의 경우, 1984년 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의 수립, 1990년 환경정책기본법의 제정, 1991년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의 수립, 특히 1992년에는 환경보전을 위한 국가선언문을 채택하는 등 80년대부터 환경보전을 위한 일련의 조치가 국가적으로 이루어져 왔었다. 그러나 이왕 수립된 계획에 대한 실천력과 지속성이 미흡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여기에는 책임자가 바뀔 때마다 과거 계획을 사장시키기 일쑤이고, 당대의 업적을 쌓기 위한 홍보성, 일과성 계획만 계속해 온 관행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환경정책상의 일관성의 결여로 자칫 환경보전업무의 존재가치를 떨어뜨릴 우려도 없지 않다.

이와 같은 현실의 원인에 대한 시대적 평가가 이루어져 가능한 분야부터 근원적인 처방을 마련하는 노력이 마련되어 시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일본의 환경보전행동계획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본은 환경보전행동계획에 따라 국가, 정부투자기관 등에서 환경보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한 다양한 실천계획의 수립과 시행이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환경기본계획에서도 지적인 바와 같이 국가의 선도적 역할은 악화된 환경의

보전, 복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국민 각자가 제분야에서 능동적으로 환경보전을 위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범이 될 수 있다. 일단 각 분야가 공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합의하고, 분야별로 현실적으로 기여가능한 부분에 대해 검토하여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실천계획을 세우는 것이 그간의 계획을 위한 계획, 지시 일변도의 정책의 폐해를 되돌아 볼 때 현실적인 실천방법이라 할 수 있다.